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0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상자산 소득세 개요	3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폐지(송언석의원안)	7

I. 개요

1.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760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3. 19.
- (3) 회 부 일 : 2026.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기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미 ‘상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아울러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과세 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향후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실무적·행정적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제21조제1항제27호 삭제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자산 소득세 개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의미함¹⁾.

「소득세법」(법률 제19563호, 2023년 7월 18일 개정,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가상자산 과세 여부 결정 및 시행 시기와 관련한 연혁을 살펴보면, 2020년 제382회 국회(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분류 및 과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먼저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분류와 관련하여 당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²⁾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³⁾을 병합심사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는 ‘양도’ 외에 ‘대여’로 인한 소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다는 점, 「소득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⁴⁾, 국제기구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점⁵⁾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의결하였음.

다음으로 과세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당초 2020년 가상자산 과세 입법화 과정에서 과세 공백 최소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등을 이유로 조속히 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과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간 및 「소득세법」 상 과세기간 시작일⁶⁾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⁷⁾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하였음.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의안번호 1676)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0. 8. 31. 의안번호 3324)

4)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5) 관련 설명은 본문 뒷부분 참조

자료 : The June 2019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Update, 2019. 6.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19/06/june-2019-ifric-update-published>

6)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7)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2020.11.) 및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0.11.12., pp. 37~49

이후 2021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과세 시작일을 2023년 1월 1일로 연기하였고(1차 유예⁸⁾),

2022년에는 주요국 금리 인상, 루나·테라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과세 시행 이전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⁹⁾ 과세 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또 한번 연기하였음(2차 유예¹⁰⁾).

2024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역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¹¹⁾이 있었으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과세 시행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 1월 1일로 또다시 연기되었음(3차 유예).

□ 한편,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

8) 시스템을 더욱 충분하게 정비하고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와 교육들을 충분히 진행한 이후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1.11.24. pp. 83~91)

9)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10) 「디지털자산 기본법」(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2년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2.11.22.. pp. 23~27)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4.11.19.

12) 의안번호 제2203518호

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중임.

2.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폐지(송언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제21조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 ☐ 시행시기: 2027. 1. 1.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시행일: 공포일

* 송언석의원안 2026. 3. 19. 발의(의안번호 17609)

☐ 개정안은 현행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 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3차례에 걸쳐 유예된 바 있으며, 3차 유예 당시인 2024년 조세소위원회 심사¹³⁾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체계 및 거래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정착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부안대로 2년 유예를 하자는 의견과, 이미 2차례에 걸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을 유예하였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2025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 2024.11.19., pp. 63~

□ 2025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가상자산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시가총액은 87.2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7.9조원 감소하였으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5.4조원 수준, 가격변동성은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5년 하반기 기준 거래가능 계정수는 1,113만개로, 거래가능 계정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가상자산시장 주요 현황]

구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시가총액	28조원	44조원	55.3조원	110.5조원	95.1조원	87.2조원
일평균 거래규모	2.9조원	3.6조원	6.0조원	7.3조원	6.4조원	5.4조원
가격 변동성	62%	62%	70%	68%	72%	73%
거래가능 계정수	606만개	645만개	778만개	970만개	1,077만개	1,113만개

주: (조사대상) 27개 가상자산사업자(18개 거래소 및 9개 지갑·보관업자)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필요성이 주장될 수 있음.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그 시행일이 2025년 1월로 한 차례 유예되었으며, 2024년 세법개정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가 확정되었음.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우려 및 가상자산이 같은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폐지하자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내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양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거주 외국인이나 해외거래처 거래 등 가상자산 해외 거래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보호체계나 거래정보 관리체계의 정착이 미흡한 등 과세 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및 정착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실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간 국내 가상자산 보호체계나 거래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미흡 및 정착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그 시행이 3차례(2021년, 2022년, 2024년 세법개정) 유예되었음.

참고로,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 1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6년 7월 현재 가상자산 관련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026년 말 개통 예정임.

또한, 2023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국제적 정보교환제도(CARF)¹⁴⁾가 개시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 간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인프라 구축 현황]

구분	추진 내용
시스템 구축	(’22.1.)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하는 거래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21~’25) 원활한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지속 실시 (’26.말(예정)) 가상자산 관련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중(’26년 말 개통 예정)
제도 보완	(’23.6.)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및 23년 6월 최초 신고 실시 (’27(예정)) 국제적 정보교환제도(CARF) 도입으로 국가 간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 교환 예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4년 세법 개정 당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체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거나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정부에서도 과세 시기 유예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14) 과세당국이 암호화자산 사업자들로부터 해외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정국 간 교환하는 제도

에 따라 과세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후 2026년 7월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되어 시행된 시스템이 없는 등 그 정착을 위한 인프라 시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 없는 인프라가 구축·정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세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할 때 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최초 2022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정비 및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고, 이후 시장 여건 및 투자자 보호체계 법제화 및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과세 시행시점을 2025년 1월 1일 및 2027년 1월 1일로 두 차례 더 연기되었음.

개정안은 이미 세 차례 과세 시행 시점이 연기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세소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이미 결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번복하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현황에 따르면,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구체적인 기본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음.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시장 과세 현황]

구분	기본공제	세율
미국	없음	(1년 이하) 10~37% (1년 초과) 0%, 15%, 20%
일본	¥20만	5~45% (지방세 10% 별도)
영국	£3,000 (주식 등 자본소득 모두 포함)	10% / 20%
프랑스	€305	30%
독일	€600 (1년 초과 보유시 비과세)	0~45%
캐나다	없음 (양도차익 일부만 과세)	15~33%
호주	없음 (1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 50%만 과세)	0~45%

주1. 2026.4. 기준

주2. 미국은 장기(1년 초과) 보유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세율

자료: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국제적 정보교환제도(CARF)¹⁵⁾가 2027년부터 개시되므로 비거주 외국인이나 해외거래소 거래에 대한 과세에 무리가 없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입장임.

15) 과세당국이 암호화자산 사업자들로부터 해외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협정국 간 교환하는 제도

문 의 처
02)6788-5157